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84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의자 : 박상혁 · 김한규 · 정준호  
한병도 · 채현일 · 김우영  
진선미 · 박수현 · 한민수  
허영 · 이연희 · 김주영  
최혁진 · 강준현 · 김영환  
한준호 · 박용갑 · 이해식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그러나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 · 매출 800억원 초과 구간의 기업도 보험 최소 가입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함.

이 때문에 올해 들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규모에 비춰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임. 또한, 제한된 보험 한도로 인해 유출 사고 기업이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도록 하고, 이용자수 · 매출

액·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이행 기준을 정하며,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 하한을 설정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7제1항 중 “필요한”을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이용자 수,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이용자 수 및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이행 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1천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u>출액의 1천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u>
-----------------------------------